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81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일
기술표준원장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하여 유모차, 보행기, 완구의 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하고, 29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표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한글로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글자

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29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표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한글로 표시토록 함.

나. 유모차 등 3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함.

○ 유모차

- 작은 부품, 질식 위험 등의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잠금장치 등의 일부 요건 및



보호자에 대한 주의· 경고 표시 강화

○ 보행기

- 좌석이 없는 것도 안전검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질식 위험 등에 대한 안전규정 및 보호자에 대한 경고 표시 강화

○ 완 구

- 어린이의 질식 또는 상해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요건을 강화하고, 제조자가 사용연령을 제품 또는 포장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연령 구분 지침을 신설

3. 개정 고시 내용 : 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조문

나. 품목별 안전검사기준

- 안전검사 부속서 15 유모차
- 안전검사 부속서 16 보행기
- 안전검사 부속서 20 완 구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26호

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 지정 계획 공고

안전검사(검정)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검정)기관을 지정코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및 제14조(안전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의한 안전검사(검정)기관의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5일
기술표준원장

1. 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 지정 대상 품목 (12품목)

| 구분 | 품목명 | 비고 |
|---------------|--|-----------------|
| 안전검사 (9품목) | 어린이 놀이기구,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 플리스포츠보호장구, 미끄럼방지 타일,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쇼핑카트, 유아용 의자, 크레용· 파스 | 품목당 1개 기관 지정 |
| 안전점검 (3품목) |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 | |

2. 신청기간 : 2004년 5월 1일 ~ 5월 8일

3. 안전검사(검정)기관의 지정 기준 (별첨 1 참조)

※ 지정 우선 순위



- KOLAS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한 기관
- 검정대상에서 검사대상으로 변경되는 품목에 대하여 안전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 검사대상에서 검정대상으로 변경되는 품목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 핵심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평가 실시
 - 2004년 6월 이내에 KOLAS 인정 획득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

4. 신청서 양식 및 구비 서류 (별첨 2 참조)

- 안전검사(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 안전검사(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

5. 신청서 접수처 : 기술표준원 민원실

6. 기타사항

상기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7235 ~7 ○ FAX : (02)503-7357



| 검사분야 | 전공과정(과목) | 기술자격 | 해당품목 |
|---------------|--|--|---|
| 1. 섬유제품 | 섬유·화학·방직· 화공·의류·의상· 의생활·의류직물·염색 | | - |
| 2. 전기기기 제품 | 전기·전자·통신· 물리·전산기공·제어 계측·반도체 | 전기·전자·통신·안전 관리(전기안전·소방 시설)·생산관리 | <안전검사> 휴대용 레이저용품 |
| 3. 화학제품 | 화학·재료·자원·산업 공학·환경공학·임산 가공·고분자·원자력· 금속·오염·화공 | 화공·금속·산업응용 (오염)·안전관리(화공 안전)·생산관리 | <안전검사> 미끄럼방지 타일, 크레 용·파스 |
| 4. 금속제품 | 금속·기계·화학· 화공·재료·자원 | 금속·기계·화공·안전관 리(화공안전·소방설비· 자동차검사·원동기검사· 기계안전)·생산관리 | - |
| 5. 기계제품 | 기계·금속·화학· 전기·전자·통신· 화공·제어계측·조선· 항공·물리·광학 | 기계·금속·화공·전기· 전자·통신·안전관리(기 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 전, 소방설비, 자동차검사, 원동기검사)·생산관리 | - |
| 6. 생활용품 | 이공계 전과정 | 기계·금속·화공·전기· 전자·통신·조선·항공· 섬유·안전관리(건설안전, 광산보안 제외)·산업응용 (오염)·생산관리 | <안전검사> 어린이 놀이기구, 바퀴 운동화, 롤러스포츠포츠보호 장구, 자동차용 정지표 지판, 쇼핑카트, 유아용 의자 <안전검정>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 트리스, 보냉용기 |



< 별첨 1 >

안전검사(검정)기관의 지정 기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 및 제14조제1항 [별표 8])

가. 안전검사(검정)를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 체계

○ 「ISO 17020(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및 「ISO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내 시험·검사인정제도(KOLAS)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ISO 17020 또는 ISO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적용기준 : 안전검사(검정)대상 공산품별 안전검사(검정)기준

나. 시험설비

○ 안전검사(검정)수행업무(품목)별로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거나,

○ 시험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시험설비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을 행할 수 있을 것

다. 검사인력 : 다음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① 대학에서 다음 표의 검사분야별 해당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졸업후 3월 이상 당해
검사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전문대학에서 다음 표의 검사분야별 해당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검사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다음 표의 검사분야별 해당 전공과목에 관련되는 과를 졸
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졸업
후 2년 이상 당해 검사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다음 표의 검사분야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월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검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검사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